

[별표 1] <개정 2008.7.18>

보호시설(제2조제1항제15호 관련)

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1. 제1종 보호시설

가.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·놀이방·어린이놀이터·경로당·청소년수련시설·학원·병원(의원을 포함한다)·도서관·시장·공중목욕탕·호텔·여관·극장·교회 및 공회당

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
다. 예식장·장례식장 및 전시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

라. 아동·노인·모자(母子)·장애인,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명 이상인 건축물

마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

2. 제2종 보호시설

가. 주택

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